한성대학교

학생회칙



# 한성대학교 총대의원회

## 목차

##### 학 생 회 칙

전문 1

|  |  |
| --- | --- |
| 제 | 1 장 총 칙 2 |
| 제 | 2 장 학 생 총 회 3 |
| 제 | 3 장 대 의 원 총 회 4 |
| 제 | 4 장 상 임 위 원 회 6 |
| 제 | 5 장 확 대 운 영 위 원 회 7 |
| 제 | 6 장 중 앙 운 영 위 원 회 9 |
| 제 | 7 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10 |
| 제 | 8 장 총학생회 집행국 11 |
| 제 | 9 장 총대의원회 11 |
| 제 | 10 장 단과대학 학생회 12 |
| 제 | 11 장 학생복지위원회 14 |
| 제 | 12 장 동아리연합회 15 |
| 제 | 13 장 재 정 16 |
| 제 | 14 장 선 거 17 |
| 제 | 15 장 회 칙 개 정 18 |
| 부 | 칙 19 |

##### 감사 시행 세칙 20

**선거 시행 세칙 31**

**별지 58**

**전 문**

한성대학교는 본 대학교의 권학정신인 진리와 지선을 바탕으로 사회정의실현 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학인으로서 진리탐구와 창조적인 대학문화를 창달하고 민주시민의 자질배양과 인격함양을 그 교육의 근본이념으로 한다. 따라서 대학 교는 이러한 근본이념의 실현을 위해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으며, 시대에 대한 끊임없는 문제제기의 장이 되어야 한다.

일제하 선열들의 피나는 민족해방투쟁에서부터 4.19혁명정신과 80년대 반독 재 반외세의 범국민적 민주항쟁운동의 거대한 맥을 이어받은 오늘의 한성인은 냉철한 역사관과 민족현실을 직시하며 역사적 과제인 분단된 민족통일을 위한 자유로운 진리탐구와 그 구체적 실현을 매진할 것을 천명한다.

이에 우리 전 한성인은 외세의 압력과 타율의 굴레 속에서 상실된 대학 본질 의 회복과 사회 민주화의 시대적 책임감을 통감하고 그 실천적 의지로 한성인 의 총의를 모아 민주적이고 투명하며 자율적으로 한성인에 의한, 한성인을 위 한 학생활동의 지표로 삼고자 2022년 10월 24일 대의원총회를 통해서 개정한다.

### 제 1 장 총 칙

###### 제 1 조 ( 명 칭 )

본회는 한성대학교 총 학생회(이하 본회라 함)라 정한다.

###### 제 2 조 ( 목 적 )

본회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학생 자치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건학정신인 진리, 지선을 바탕으로 민주인 으로서의 학교발전에 능동적으로 기여하고 학생들 간의 단결을 강화하며 대학의 자치를 완전히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3 조 ( 설 치 )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단 대학원생은 제외하며 휴학, 정학 중인 자는 그 기간 동안 자격이 정지된다.

###### 제 4 조 ( 회원의 권리와 의무 )

1. 본 회의 회원은 회칙에 의거하여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본 회의 모든 자치 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2. 본 회의 회원은 운영 및 회비의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3. 본 회의 회원은 회칙 준수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지며, 학생회비를 미납한 자는 다음과 같은 제한이 있다.
   1. 학생회비를 인준 받는 학생 자치 기구에서 진행하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2. 총학생회, 대의원총회, 총대의원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 각 단과대학 학생 회, 각 과 학생회로서의 활동을 제한한다.
   3. 2)에 따라 총학생회, 대의원총회, 각 단과대학, 각 중앙공개기구, 각 트랙학생회, 각 과 (부)학생회, 신설기구는 학기별 학생회의 구성원 조직도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한다. (조 직도에는 학생회 구성원의 이름, 학부(과), 학번, 직책, 학생회비 납부 여부를 포함한 다.)
   4. 조직도 제출 기한은 학기당 학기개시 30일안에 제출한다.
4. 본 회의 회원은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보장하며 이를 확보할 권리를 가진다.
5. 본 회의 회원은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제반 정치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6. 본 회의 회원은 본회를 부인하는 명백한 침해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다.
7.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자치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처벌이나 징계에 대하여 학교당국 의 관계 위원회에 출석, 발언할 수 있다.
8. 본 회의 운영기준과 결의사항을 준수한다.
9. 본 회의 회원은 조직의 규율을 준수하고, 본회의 명예를 유지하고 수호할 의무를 가진 다.

###### 제 5 조 ( 특별기구 )

1. 본회의 활동상 필요한 경우에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2. 특별 기구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승인을 받 아 총학생회장이 구성한다.

###### 제 6 조 ( 구성 )

본회는 제 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학생총회,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집행부를 둔다.

###### 제 7조 ( 겸직 금지 )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직을 동시에 2개 이상 가질 수 없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총대의원회 정의장과 부의장
3. 각 단과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4.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과 부위원장
5. 동아리연합회 정회장과 부회장
6. 각 학과(부)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7. 각 트랙학생회장
8. 대의원 및 상임위원
9.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 학생회의 국장
10. 교내 언론기구 국장과 국원

### 제 2 장 학 생 총 회

###### 제 8 조 ( 지 위 )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다.

###### 제 9 조 ( 구 성 )

본 회의 회원 전체로 구성한다.

###### 제 10 조 ( 권 한 )

1. 학생총회는 본 회의 활동전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받는다.
2. 본 회의 존립 및 회원전체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총학생회장단의 탄핵안 심의 및 의결
   1. 총학생회장단에 대한 탄핵발의는 전체회원 1/10 이상의 연서로 할 수 있다.
   2. 탄핵안은 총회를 통해 재적회원 과반수 투표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단과대 학생회장 및 자치기구장의 탄핵안은 총 학생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과대 및 자치기구회칙에 따르며, 회칙이 없을 경우 총 학생회칙에 준한다.

###### 제 11 조 ( 의 장 )

1.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맡는다. 총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총학생회장이 의장이 된다.
2. 총학생회 정․부회장이 모두 탄핵, 소추중이거나 궐위 시에는 총대의원회 의장 혹은 부의 장이 맡는다.

###### 제 12 조 ( 소 집 )

1.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의 요구가 있거나 회원 1/10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총학생회장이 소집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건에 관해서 총 학생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전항 단서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임시총학생회의 경우는 11조 1항에 준하고 총학생회장이 부재 시 소집된다.
4. 소집 공고된 내용의 변경은 총회소집 24시간 전에 공고한다.

###### 제 13 조 ( 개회 및 의결 )

1. 회원 1/10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최한다.
2. 참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중요사항은 전체투표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 장 대 의 원 총 회

###### 제 14 조 ( 지 위 )

본 회의 학생총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의결기구이다.

###### 제 15 조 ( 목 적 )

본 회 학생의 대의기관으로서, 각 기구 및 학생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본 회의 효 율적인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6 조 ( 구 성 )

본 회의 대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 제 17 조 ( 대의원 )

1. 대의원은 본 회 전체 트랙, 학과(부)의 각 학년별 대표 1인을 기준으로 한다. (단, 트랙 대의원 1학년은 제외한다.)
2. 서양화, 동양화,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전공을 제외한 인문예술대학 1학년 대의원은 6 명으로 한다.
3. 뷰티디자인매니지먼트 학과를 제외한 디자인대학 1학년 대의원은 ICT디자인학부 2명,

글로벌패션산업학부 2명으로 한다.

1. 사회과학대학, IT공과대학 1학년 대의원은 6명으로 한다.
2. 창의융합대학 1학년 대의원은 2명으로 한다.
3. 대의원은 대의원 총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4. 대의원은 각과 선출 후 대의원 조직국에 등록함으로서 대의원 자격을 가질 수 있다.
5. 대의원은 대의원 선거 시 대의원의 연락처를 후보자에게 알리는 의무를 갖는다.

###### 제 18 조 ( 회 의 )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단, 필요시 의장은 비공개 회의를 할 수 있다.

###### 제 19 조 ( 의 장 )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한다.
2. 의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3 총대의원회 의장이 궐위 시, 부의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의장, 부의장 모두 탄핵 소추 중 이거나 궐위 시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 상임위원이 권한을 대행한다.

###### 제 20 조 ( 임 기 )

대의원 임기는 회계 연도에 준한다. 단, 임의적으로 한학기로 할 수 있다.

###### 제 21 조 ( 징 계 )

대의원총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사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학생회칙을 어겼을 때.
2. 대의원이 직무를 해태한 때.
3. 총회(상임위원회의) 결석 1회 또는 지각 및 조퇴의 합이 2회일 때.

###### 제 22 조 ( 징계방법 )

1. 의장은 전조의 징계사유가 있는 대의원에 대하여 우선 경고한다.
2. 당해 대의원이 경고에 불구하고 의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의원 총회의 의결에 의 하여 그 대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다.
3. 징계에 의해 제명된 대의원의 해당 학과(부), 트랙, 전공의 학년은 당해 잔임 기간 동안 의 대의원을 선출한다.
4. 박탈당한 대의원의 경우 대의원 비교과 포인트, 장학금 등을 미지급한다.

###### 제 23 조 ( 업무 및 권한 )

대의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의
2. 회칙 개정의 발언권
3. 학생 총회의 소집 요구권
4. 학생회비 심의 및 승인권
5.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에 대한 심의 및 승인권
6. 예산 결의안의 심의 및 승인권
7. 결산 심의권
8. 대의원 총회 의장, 부의장 선출권
9.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대의원총회 의장 탄핵권
10. 9항에 명시되지 아니한 학생자치기구의 회장 및 위원장 탄핵권
11. 각 집행국 전 부장의 일괄 인준권
12. 각 집행국 전 부장의 해임 의결권
13. 운영 위원 및 각 부장의 출석 요구권
14. 기타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 24 조 ( 소 집 )

대의원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대의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5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 상임위원 1/2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의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의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대의원총회는 당해 연도 대의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 제 25 조 ( 의 결 )

1. (일반 정족수) 제 22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 사항 중 아래의 항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 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4, 5, 6, 8, 11, 12, 13, 14항)
2. (특별 정족수) 제 22조에 규정된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 중 2(3)항과 10항은 재적 대의 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하고, 9항은 재적 대의원 의 2/3이상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에 의하여 의결한다.

### 제 4 장 상 임 위 원 회

###### 제 26 조 ( 구 성 )

1. 대의원회의 업무수행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상설기구이다.
2. 상임위원은 각 트랙, 학과(부)별로 3학년 혹은 4학년 대의원 1인을 기준으로 한다.

###### 제 27 조 ( 업무 및 권한 )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1. 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한 회칙 개정안
   2. 탄핵의 소추
   3. 대의원총회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4. 집행부의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 및 사업
2. 본 회의 경리, 서무 및 기타 사업전반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다.
3. 대의원총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상임위원회가 대의원총회의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
4. 상임위원회는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5. 필요한 경우 특별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임무 완료시는 상임위원회의 결정으로 해체된다.
6. 기타 대의원총회에 관한 제반 사무를 관장한다.
7. 상임위원은 매학기 초에 각 학과(부), 트랙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수입을 보고받을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8. 상임위원은 매학기 말에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학기의 지출을 보고받아 감사할 의무와 권한을 갖는다.
9. 상임위원은 각 학과(부), 트랙, 전공 학생회로부터 수입과 지출을 보고받아 검토한 후 해당 내역을 총대의원회에 제출할 의무를 갖는다.

###### 제 28 조 ( 소 집 )

1. 정기총회는 매년 3월과 5월, 그리고 9월과 11월에 대의원 총회 의장이 소집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대의원 1/3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위원회(확대운영위원회 또는 중 앙운영위원회) 재적인원 2/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상임위원회 소집은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단 전항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상임위원회는 당해 연도 상임위원 자격을 가진 자의 과반수의 등록 시 소집할 수 있다.

###### 제 29 조 ( 의 결 )

1. 제25조 1,2항을 따른다.

### 제 5 장 확 대 운 영 위 원 회

###### 제 30 조 ( 지 위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 회의 최고운영기구이다.

###### 제 31 조 ( 구 성 )

확대운영위원회는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부학생회장, 각 중앙공 개기구장, 부회장, 각 과학생회장, 부학생회장, 트랙학생회장, 신설 학생회기구장, 부회장으 로 구성한다.

###### 제 32 조 ( 조 직 )

확대운영위원회는 그의 목적달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의장, 중앙운영위원회를 두고 필요 에 따라 기타기구를 둘 수 있다.

###### 제 33 조 ( 의 장 )

확대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단, 사고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 제 34 조 ( 업무 및 권한 )

확대운영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가진다.

1. 회칙 개정의 발언권
2. 학생총회의 소집요구권
3. 대의원총회 소집요구권
4. 총학생회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서의 심의권 및 승인권
5. 총학생회 집행위원의 출석 요구권
6. 기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요하는 사항

###### 제 35 조 ( 회 의 )

1. 확대운영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둔다.
2. 정기 확대운영위원회는 매월 1회를 원칙으로 한다.
3. 임시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거나 확대운영위원회원의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 제 36 조 ( 의 결 )

확대운영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 제 37 조 ( 임 기 )

확대운영위원회 의장 및 의원의 임기는 회계연도에 준한다.

###### 제 38 조 ( 총학생회 규칙 )

확대운영위원회는 본회의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총학생회 규칙을 민주적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 6 장 중 앙 운 영 위 원 회

###### 제 39 조 ( 지 위 )

중앙운영위원회는 확대운영위원회의 상설운영기구이다.

###### 제 40 조 ( 의 장 )

중앙운영위원회의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된다. 단, 사고 시에는 부총학생회장이 된다.

###### 제 41 조 ( 구 성 )

위원장은 총학생회장, 부위원장은 부총학생회장이 되며, 총선거(또는 재선거)를 통해 선출 된 총대의원회 의장, 총대의원회 부의장, 단과대학 학생회장, 단과대학 부학생회장, 학생복 지위원장, 학생복지부위원장, 동아리연합회 회장,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으로 구성된다.

###### 제 42 조 ( 업무 및 권한 )

운영위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학생회비를 책정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
2. 총학생회의 제반사항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3. 총학생회의 전체 예산을 검토, 조정, 심의하여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결산 보고서를 검토하여 상임위원회에 상정한다.
6. 집행부의 업무 진행에 대하여 전반적인 검토, 심의를 한다.
7. 집행부의 각 부장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8. 학생회칙 개정안을 발의하여 대의원총회에 상정한다.
9. 기타 운영회 업무를 수행한다.
10. 중앙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1. 학생복지 기금의 집행을 의결한다.

###### 제 43 조 ( 소 집 )

중앙운영위원회는 정기운영회와 임시운영회를 둔다.

1. 정기 중앙운영위원회는 학기 중 매주 1회로 한다.
2. 임시 중앙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 제 7장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 제 44 조 ( 지 위 )

1. 총학생회장은 본 대학의 모든 학생과 학생회를 대표하여 운영위원장과 집행국의 장이 된다.
2.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3. 부총학생회장은 총학생회장을 보좌하여, 총학생회장 궐위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본 회의 정·부회장은 학생대표로서 학교의 제반 운영위원회에 참석, 본 회원의 권익을 위한 발언권을 갖는다.

###### 제 45 조 ( 임기 및 선출 )

1.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 81조에 따른다.
2. 총학생회장, 부총학생회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 8조에 따른다.
3. 총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총학생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 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총학생회장이 공석인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 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총학생회 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 탄핵 시 대의원 의장이 총학생회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 제 46 조 ( 총학생회장의 임무 및 권한 )

1. 집행국의 각 국장을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을 거쳐 이를 임명하며 총학생회 관리 하의 특별위원회 의장은 총학생회장이 추천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정책을 검토, 임명하며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거친다.
2. 중앙운영위원회, 집행국 회의를 소집하여 그 업무를 주관한다.
3. 총학생회의 전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및 결산을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임위원회와 대의원 총회에 제출한다.
4.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집행한다.
5. 집행국의 각 국장 해임하고 새로 임명할 수 있다.
6. 본 회 회원들의 요구와 의사를 수렴하여 학생자치 및 최고행정에 관하여 학교 당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본 회의 대표로서 모든 제반사항의 보고 의무를 진다.
8.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9. 기타 총학생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 제 8 장 총 학 생 회 집 행 국

###### 제 47 조 ( 지 위 )

집행국은 본 회의 최고 집행기구이다.

###### 제 48 조 ( 구 성 )

총학생회집행국은 정․부 학생회장 및 6개(정책국, 총무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 졸업준비 국)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타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49 조 ( 업무 및 권한 )

집행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을 진행한다.
2. 집행국의 사업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3. 집행국은 보고서 및 결산 보고서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한다.
4. 집행국 제반활동을 집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국 : 본 회의 사업계획과 운영의 강화를 위해 정책 생산을 담당한다.
   2. 총무국 : 본 회의 서무 재정에 관한 제반 사무를 담당한다.
   3. 홍보국 : 본 회의 운영 및 행사의 홍보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획국 : 본 회의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5. 운영국 : 본 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담당한다.
   6. 졸업준비국 : 본 회의 원활한 졸업을 위한 지원을 담당한다.

### 제 9 장 총 대 의 원 회

###### 제 50 조 ( 지 위 )

총대의원회는 본 회의 최고 감사기구이다.

###### 제 51 조 ( 구 성 )

1. 총대의원회는 대의원과 관련한 제반의 업무를 수행한다.
2. 총대의원회는 정·부의장 및 6개(감사국, 사무국, 정책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의 부서 를 두며 필요시 타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52 조 ( 정, 부의장 )

1. 의장은 대의원회를 대표하며. 정·부의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2. 총대의원회는 부의장을 두며 정의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 제 53 조 ( 임기 및 선출 )

1.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 81조에 따른다.
2.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 8조에 따른다.
3. 의장 궐위 시는 부의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5개월 이 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의장 궐위 시는 상임위원회에서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적 대의원 과 반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의장이 판단하의 공석으 로 둘 수 있다.)
5. 총대의원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총대의원회 정․부의장 탄 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54 조 ( 업무 및 권한 )

총대의원회는 대의원총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다 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1. 감사국 : 본 회의 학생회비 지출 및 사업에 관한 감사 일체를 담당한다.

매 예산 인출시마다 예산 인출사항을 통보받는다. 각 기관에서 불이행시 예산 인출을 동결할 수 있으며 운영계획서와 다른 경우도 해당된다.

감사관련 업무 및 사후 처리는 감사 시행세칙에 따른다.

1. 사무국 : 총대의원회의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2. 정책국 : 총대의원회의 정책 생산 및 정책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3. 홍보국 : 총대의원회의 운영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4. 기획국 : 총대의원회의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5. 운영국 : 총대의원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담당한다.

### 제 10 장 단 과 대 학 학 생 회

###### 제 55 조 ( 지 위 )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학의 최고 기구이다.

###### 제 56 조 ( 구 성 )

1. 단과대학 학생회는 당해 대학 정원으로 구성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는 단과대 정․부 학생회장 및 4개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타 부서를 둘 수 있다. (총무국, 홍보국, 기획국, 운영국)

###### 제 57 조 ( 정, 부회장 )

1. 단과대학 학생회장은 당해 대학 학생회를 대표하며, 정·부학생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 다.
2. 단과대학 학생회는 부학생회장을 두며 정학생회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 제 58 조 ( 임기 및 선출 )

1.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 81조에 따른다.
2.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 8조에 따른다.
3. 정학생회장 궐위 시는 부학생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학생회장이 공석인 경우 해당 단과대학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총대의원회 의 장은 해당 단과대학 대의원을 소집하여 해당 단과대학 소속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정학생회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단과대학 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정․부학생회장 탄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59 조 ( 업무 및 권한 )

1. 단과대학 학생회는 해당 단과대학 내의 진행되는 모든 자치활동을 주관한다.
2. 단과대학 학생회는 대의원총회로부터 학생회비를 인준 받아 자치활동을 운용한다.
3. 당해 대학의 자치활동을 수행하며 운영위원회의 업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4. 단과대학 학생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 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5. 총무국 : 단과대학 학생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6. 홍보국 : 단과대학 학생회 운영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7. 기획국 : 단과대학 학생회의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8. 운영국 : 단과대학 학생회의 원활한 조직운영을 담당한다.

|  |  |  |
| --- | --- | --- |
| **제** | **60 조** | **( 학과(부) 학생회 )** |
| 1. | 학과(부) | 학생회는 학과(부) 학생들의 자치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 2. | 학과(부) | 학생회장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
| 3. | 학과(부) | 학생회장은 임기기간 중 학과(부) 변경을 할 수 없다. |

###### 제 61 조 ( 트랙 학생회 )

1. 단과대학은 트랙을 대표하는 트랙학생회장을 선출한다.
2. 선거권은 각 학과(부) 학생들과 트랙을 제 1트랙으로 하는 재학생에게 있다.
3. 입후보자의 자격조건은 각 학과(부) 학생들과 트랙을 제 1트랙으로 하는 재학생으로 한 다.
4. 트랙학생회장은 확대운영위원회에 참석할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5. 단과대학별로 트랙학생회장을 선출함에 있어 필요시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단선 관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내규 에 따른다.
6. 트랙 학생회장은 임기기간 중 트랙 변경을 할 수 없다.

###### 제 62 조 ( 자치내규 )

단과대학 학생회의 자율적 활동을 위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단과대학 학생회 자치 내규에 따른다. 단, 해당 학생회의 자치내규가 없을 시는 본 회칙을 따른다.

### 제 11 장 학 생 복 지 위 원 회

###### 제 63 조 ( 지 위 )

학생복지위원회는 한성대학교 전체 학생의 복지를 담당하는 기구이다.

###### 제 64 조 ( 구 성 )

학생복지위원회는 정․부위원장 및 6개(정책국, 총무국, 홍보국, 운영국, 기획국, 연대국)의 부서를 두며 필요시 타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65 조 ( 정, 부위원장 )

1. 학생복지위원장은 학생복지위원회를 대표하며, 정·부위원장은 중앙운영위원이된다.
2. 학생복지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 제 66 조 ( 임기 및 선출 )

1.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 81조에 따른다.
2.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 8조에 따른다.
3. 학생복지위원장 궐위 시는 부위원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간 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부위원장이 공석인 경우 확대운영위원회는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회를 통해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학생복지위 원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학생복지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학생복지위원장, 부위원

장 탄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67 조 ( 업무 및 권한 )

1. 학생들의 학생복지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2. 학생복지 기금의 관리를 일임한다. 단, 기금의 사용과 관련해서는 중앙운영위원회의 동 의와 서명을 필한다.
3. 학생복지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부서를 두되 운영의 목적에 맞춰 자율적으로 부서를 운영할 수 있다.
   1. 정책국 : 학생복지위원회의 정책 생산 및 정책 관련 제반 사항을 관리한다.
   2. 총무국 : 학생복지위원회의 모든 재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3. 홍보국 : 학생복지위원회 운영 및 행사의 홍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4. 운영국 : 학생복지위원회 모든 행사의 운영을 담당한다.
   5. 기획국 : 학생복지위원회 모든 행사의 기획을 담당한다.
   6. 연대국 : 학생복지위원회 SNS 페이지 관리 및 소통을 담당한다.

###### 제 68 조 ( 회 칙 )

학생복지위원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 제 12 장 동 아 리 연 합 회

###### 제 69 조 ( 지 위 )

동아리연합회는 본교 동아리 최고 자치 기구이다.

###### 제 70 조 ( 구 성 )

1.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연합회에 등록된 본교 모든 동아리로 구성한다.
2. 동아리 연합회는 정․부회장 및 4개(정책국, 사무국, 홍보국, 운영국)의 부서를 두며 필요 시 타 부서를 둘 수 있다.

###### 제 71 조 ( 정, 부회장 )

1.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동아리연합회를 대표하여, 정·부회장은 중앙운영위원이 된다.

3. 동아리연합회는 부회장을 두며 정회장이 부재 시 모든 업무를 대행한다.

###### 제 72 조 ( 임기 및 선출 )

1.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의 임기는 선거시행세칙 제 81조에 따른다.
2.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의 자격은 선거시행세칙 제 8조에 따른다.
3. 동아리연합회장 궐위 시는 부학생회장이 잔임 기간 동안 권한을 대행한다. (단, 잔임 기 간이 5개월 이상일 때는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4. 동아리연합회 부회장이 공석인 경우 각 동아리의 회장단은 후보 1인을 선임, 대의원총 회를 통해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참석과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새로 임명한다. (단, 동아리연합회장의 판단 하에 공석으로 둘 수 있다.)
5. 동아리연합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궐위되거나 대의원총회에서 동아리연합회장, 부회장 탄 핵 시 즉시 선거로 선출하여야 한다.

###### 제 73 조 ( 업무 및 권한 )

동아리 연합회는 동아리 활동에 관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 제 74 조 ( 회칙 )

동아리 연합회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본 회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이고 독자적인 회칙을 갖는다.

### 제 13 장 재 정

###### 제 75 조 ( 재 정 )

1. 본 회의 재정은 학생회비로 한다.
2. 본 회의 재정은 본회 활동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 제 76 조 ( 회계연도 )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 1년으로 하여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각 결산과 감사를 실시한다.

###### 제 77 조 ( 학생회비 )

1. 본 회의의 학생회비는 학기별 등록 시 납부하는 학생회비를 의미한다.
2. 학생회비 납부액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책정하여, 상임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대의원총회에서 확정한다.

###### 제 78 조 ( 예산편성 )

* 1. 예산은 각 단위 집행부가 단위별, 사업계획별로 편성하여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 후 대의원 총회에서 확정한다.

* 1.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조정된 예산안은 학기 개시 후 1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어 야 한다.

###### 제 79 조 ( 준예산집행 )

1.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될 때까지 전년도 예산의 50%까지 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2. 예산안이 확정되지 못한 경우 각 행사에 따른 예산을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상의 확정한다.

###### 제 80 조 ( 심의 및 승인 )

1. 상임위원회는 제출된 예산안을 7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2. 상임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반송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재편성된 예산안은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대의원총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3. 예산의 최종 승인은 대의원총회 제적 인원 과반이상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 시 가결된다.
4. 예산 승인 절차는 각 단위의 예산안 발표 – 질의응답 – 의결 순으로 진행하며, 예산 승 인은 각 단위의 전체 예산안이 아닌 사업별 예산안 승인에 따른다.

###### 제 81 조 ( 예산집행 및 추가경정예산 )

1. 예산 집행 안은 예산안에 의거하여 각 행사 종료 시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 예산안이 확정된 후 생기는 부득이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며, 경정 예산안은 중앙운영위원회 조정을 거쳐 상임위원회에 심 의 확정한다.

###### 제 82 조 ( 공고 )

본 회의 각 자치 기구는 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예산 및 결산 내역을 10일 이내 10일간 공고한다.

###### 제 83 조 ( 예산관리 )

학생회비 징수, 관리는 학교당국에 위임하되 그 인출 및 집행은 총학생회장 및 대의원장의 결재에 따른다.

### 제 14 장 선 거

###### 제 84 조 ( 선거 )

본 회의 선거는 보통, 직접, 비밀, 평등선거로 한다.

###### 제 85 조 ( 선거권 )

선거권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당해 학기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

###### 제 86 조 ( 피선거권 )

총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선거시행세칙의 자격기준, 입후보자 등록기준을 따른다.

###### 제 87 조 ( 선거 시기 )

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학 학생회,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대표자에 대한 선거는 임기 전년도 11월에 실시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정시기에 행한다.)
2. 학과(부) 학생회장 및 트랙학생회장에 대한 선거 시기는 각 단과대학 선거시행세칙을 따 른다.

###### 제 88 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공정하고 민주적인 선거를 위해 본회는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 89 조 ( 선거시행세칙 )

1. 선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시행세칙에 따른다.
2.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개정은 제15장 회칙개정을 따른다.

### 제 15 장 회 칙 개 정

###### 제 90 조 ( 발 의 )

회칙개정안의 발의 요건은 다음 하나 중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발의
2. 운영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3. 본 회 회원의 1/10 이상의 발의
4. 상임위원회 2/3 이상의 발의

###### 제 91 조 ( 공 고 )

회칙개정의 발의 시 총대의원회 의장, 부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공고하 되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고 공고 후 2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한다.

###### 제 92 조 ( 의 결 )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재적대의원은 등록 대의원 의장이 공포한다.

###### 제 93 조 ( 공 포 )

확정된 회칙개정안은 총학생회장이 공포한다. 총학생회장이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의원 의장이 공포한다.

###### 제 94 조 ( 공고 )

확정일로 10일 이내에 공고한다.

### 부 칙

1. (효력발생) 본 회칙은 공포 후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2. (유권해석)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

**한 성 대 학 교**

**감 사**

**시 행**

**세 칙**



# 한성대학교 총대의원회

## 목차

[제 1 장 총칙 22](#_TOC_250020)

[1절 총칙 22](#_TOC_250019)

[2절 중앙감사위원회 22](#_TOC_250018)

[3절 중앙감사위원 23](#_TOC_250017)

[4절 단대감사위원회 23](#_TOC_250016)

[제 2 장 권한 24](#_TOC_250015)

[1절 총칙 24](#_TOC_250014)

[2절 결산의 확인, 회계 검산 및 감사의 범위 24](#_TOC_250013)

[3절 직무 감찰의 범위 25](#_TOC_250012)

[4절 감사방법 26](#_TOC_250011)

[5절 통보와 협력 27](#_TOC_250010)

[6절 감사결과의 처리 28](#_TOC_250009)

[7절 재심의 29](#_TOC_250008)

### 제 1 장 총 칙

##### 1절 총칙

###### 제 1 조 (목적)

학생회비의 올바른 운용 및 각 자치기구의 신뢰성 있는 사업의 진행과 원활한 학생기구 행 정체계를 마련하고 학생회 및 기타 자치기구의 활동에 대한 (피감사인) 주장을 감사위원이 미리 설정된 감사기준과의 일치 정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우들에게 공개할 목적으로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는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감사 시행 규칙)

본 회칙에서 다루지 않는 감사에 대한 사항은 감사시행규칙에 따른다.

##### 2절 중앙감사위원회

###### 제 3 조 (지위)

중앙 감사위원회는 총대의원회에 소속하되 직무에 관하여는 독립의 지위를 가진다.

###### 제 4 조 (조직)

중앙감사위원회는 총대의원회 감사국으로 조직한다.

###### 제 5 조 (감사위원장)

* 1. 중앙감사위원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한다.
  2. 중앙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대표이며 감사에 관한 모든 직무를 감독한다.
  3. 중앙감사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총대의원회 부의장 이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 제 6 조 (의결 및 의결사항)

중앙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1/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 며, 다음 사항은 중앙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 결산의 확인에 관한 사항
2. 변상책임의 판정에 관한 사항
3. 징계 및 문책 책임의 요구에 관한 사항 (민·형사 처분)
4. 시정 등의 요구에 관한 사항 (주의)
5. 개선요구에 관한 사항 (경고)
6. 재심의에 관한 사항
7. 결산검사 보고 및 수시 보고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 7 조 (의안의 작성)

중앙 감사위원회에서 의안을 작성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일을 처리한다.

###### 제 8 조 (증인과 감정인)

중앙 감사위원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관계인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자문 할 수 있으며 감정을 위촉할 수 있다.

#### 3절 중앙감사위원

###### 제 9 조 (임기 및 자격)

* 1. 중앙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2. 중앙 감사위원은 당해 연도 1학기 내에 상임위원회의 동의로 감사위원장이 임명한다.

###### 제 10 조 (신분보장)

중앙 감사위원은 탄핵 결정이나 징계, 심신미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다만, 탄핵결정이나 징계 시에는 당연히 면직되며 심신미약의 경우 중앙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면직을 명한다.

###### 제 11 조 (겸직금지)

감사의 대상이 되는 기구의 임원직을 겸할 순 없다.

#### 4절 단대감사위원회

###### 제 12 조 (목적)

학과 학생회비의 올바른 운용 및 각 과 학생회 사업의 진행과 원활한 학생회 활동에 대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3 조 (지위)

단대 감사위원회는 학과(부) 및 트랙 감사에 관하여 감사위원회를 제외한 독립의 지위 를 가진다.

###### 제 14 조 (조직)

단대 감사위원회는 각 소속단과대별 상임위원 전체와 단대 학생회장으로 구성한다.

### 제 2장 권한

##### 1절 총칙

###### 제 15 조 (임무)

감사위원회는 학생 자치기구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 감사와 회계를 상시 검사, 감독하여 그 적정을 기하고 자치기구 및 집행요원의 직무를 감찰하여 자치기구의 원활한 행정운영을 꾀하여 사업 감사, 공약감사 등을 통하여 학생들과의 신뢰를 구축하고 민주학원건성에 기여한다.

##### 2절 결산의 확인, 회계 검산 및 감사의 범위

###### 제 16 조 (감사대상기구)

중앙감사위원회는 다음 기구들의 공약사항,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한다.

1. 총학생회
2. 총대의원회
3. 각 단대학생회
4. 학생복지위원회
5. 동아리 연합회
6. 각 학과 학생회
7. 각 트랙 학생회
8. 신설 학생회

###### 제 17 조 (총대의원회의 감사)

총대의원회의 감사는 감사시행세칙에 따라 감사를 진행하되, 각 단과대학별 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상설 기구의 최종 의결을 거쳐야한다. 단, 총대의원회의 감사에 대해서는 해당 상설 기구에 포함된 상임위원의 전원의 만장일치에 따른다.

##### 3절 직무 감찰의 범위

###### 제 18 조 (감사의 분류)

감사는 공약감사, 사업 감사, 회계감사 및 보조감사로 나뉜다.

1. 공약감사는 선거당시의 공약들과 성과와 노력에 대하여 감사한다.
2. 사업 감사는 계획안의 행사에 있어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허위 기재한 사업에 대한 집 행 후에도 이를 재검토하지 않는 사항
   1. 시정해야함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사항
   2. 행사계획 수립은 적절했는가?
   3. 자치기구 내에서 충분한 협의와 학생들의 의사수렴을 거쳤는가?
   4. 행사계획은 자치 기구의 존립목적과 논리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5. 선택한 행사계획이나 혜택은 모두에게 공평히 배분되는가?
   6. 자치 기구는 회칙에 의해 충분히 운영되고 있는가?
   7. 자치기구 상호간에 행사나 업무 중복은 없는가?
   8. 행사나 활동이 의도했던 목적을 달성하는데 효과적이♘는가?
   9. 행사나 활동이 의도하지 않은 효과가 있지는 않았나?
   10. 행사활동이 성공, 실패로 평가 될 경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3.회계감사
3. 자치 기구는 수입, 지출 등 예산에 대한 적절한 통제장치를 유지하고 있는가?
4. 자치 기구는 제반 물품의 운영사항을 회계기록에 적절히 나타내고 있는가?
5. 회계보고서는 정확하고 신빙성이 있으며 유익한 재무자료를 담고 있는가?
6. 필요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는 없는가?
7. 잘못된 구매행위나 필요이상으로 많은 물품을 축적해 놓고 있지 않은가?
8. 자원을 남용, 낭비하고 있지 않은가?
9. 수입과 비교해 산출은 적정한 것인가?
10. 산출을 얻는데 투입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11. 기타

4. 기타 세부적인 원칙들은 당해 연도 중앙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4절 감사방법

###### 제 19 조 (감사자료 제출)

피 감사기구는 감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당해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
2. 금전출납부
3. 사업별 영수증 철
4. 사업별, 날짜별 예산 집행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계약서
7. 견적서
8. 선거공약 경과보고서
9. 예산 신청서(기안용지)
10. 예산 수령 통장 원본
11. 기타 감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지정되는 자료

###### 제 20 조 (감사 시행 규칙)

피 감사기구는 감사자료 제출 시 다음 규칙을 따른다

1. 학과의 사업에 있어 사업 당 금액을 사업비라 한다.
2. 사업비를 제외한 모든 금액을 합산하여 운영비라 칭한다.
3. 공통사업(개강파티, 엠티, 신입생환영회, 과밤, 대동제)은 회식 또는 운영비가 아닌 사업으 로 편성하고 이를 포함한 모든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일 14일 이전에 중앙 감사 위원회에 제출해야하며, 감사위원회는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3일 이내에 심의하여 사업으 로 편성한다.
4. 학생회 엘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중앙 감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5. 사업계획서는 해당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목적, 참여예상인원수, 사업 예상비용이 기록되 어 있어야 한다.
6. 사업 평가서는 해당 사업명, 사업 목적, 참여인원수, 사업비용, 사업내용이 기록되어있어 야 하며, 감사위원회에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시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7. 사업자 등록증 사본은 300,000원 이상의 영수금액 결제 시 제출한다,
8. 견적서는 1,000,000원 이상의 영수 금액 결제가 필요할 때 계약을 위하여 계약하는 곳 포 함 세 곳 이상의 사업장에서 견적서를 요구하여 감사 자료에 첨부하여야 한다.
9. 공통사업 이외의 경우 7항과 8항에 해당할시 사업계획서와 견적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을 동시에 제출한다.
10. 사업당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0%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단, 인준 받는 학생회는 제외 한다.)
11. 사업에 따른 회식은 사업 종료 후 2주일 이내로 시행되어야하며, 이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은 중앙감사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다.
12. 사업 및 운영에 있어 과다 지출의 여부는 사업 평가서를 참고로 하되, 과다 지출로 생 각되어지는 부분에 있어서 증명할 수 있는 참관인을 대동할 수 있다.
13. 사업별 날짜별 예산 집행표와 영수증의 순서가 날짜 상으로 정확하여야 한다.
14. 각 단위에서 진행한 수익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참가비에 대해서는 수입과 지출이 분명 히 적혀있어야 한다.
15. 영수증은 카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이어야 하며, 영수 품목이 나와 있지 않는 경우 사 업자등록번호, 상호명, 상호주 성명, 작성년월일, 금액, 품목, 도장이 기재되어있는 간이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한다.
16. 규격영수증을 취할 수 없을 경우 카드전표 혹은 현금영수증, 간이영수증과 함께 사유서 를 제출한다. 사유서를 검토 후 정당한 사유가 아닐 경우 영수증 미제출로 간주한다.
17. 학내 단위와 단위간의 거래에는 수령하는 단위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어야 하며, 일반 학 우 및 개인과의 거래 시 금전수령자의 신분증 사본, 이름, 연락처, 서명, 금액, 계좌 및 수령 방 법이 있어야 한다.
18. 인터넷 뱅킹이나 계좌 이체를 통한 거래에도 반드시 규격 영수증을 요구하여 자료로서 첨부하여야 한다. 은행의 계좌 이체 거래 명세서만의 제출은 불허한다.
19. 운영비 및 사업비의 과다지출이 발견될 경우 중앙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초과금액 을 반환한다.
20. 사업 진행 및 지출에 관한 모든 변수는 사유서를 통해 중앙 감사 위원회에 전달하며, 그 사항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기각할 수 있다.
21. 본교에서 지정한 1학기 종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와 하반기 감사를 구분한다.
22. 인준 받는 기구에 한해서는 1학기 종강일을 기준으로 상반기 감사 종료일까지의 지출을 불허한다.
23. 공약경과보고서는 출마 시의 선거 공약 전체에 대하여 작성한다.
24. 공약경과보고서에는 공약명, 공약내용, 이행여부, 공약 평가 또는 불이행 사유와 함께 증 빙자료가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

###### 제 21 조 (서면감사, 실지감사)

감사규정에 의해 제출된 서류에 대해 항시 서면감사 외에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서 실지감 사를 할 수 있다.

###### 제 22 조 (출석답변, 서면제출, 봉인 등)

감사위원회는 감사 상 필요한 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자 또는 감사사항에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요구
2. 증빙서, 변명서, 기타 관계문건, 물품의 제출요구
3. 창고, 금고 문건, 물품의 봉인

##### 5절 통보와 협력

###### 제 23 조 (통보)

감사를 받는 기구의 장은 다음 사항이 있을 때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1. 현금, 물품, 기타의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을 때
2. 감찰을 받는 자의 잘못을 발견하거나 징계처분이 있을 때

###### 제 24 조 (협조)

감사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대상기구나 전문가에게 자문,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6절 감사결과의 처리

###### 제 25 조 (변상 책임의 판정)

1. 중앙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따라 회계 관계자에 대한 변상책임의 유, 무를 판정한다.
2. 중앙감사위원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책임이 있다고 판정하였을 경우 변상책임 자, 변상액, 변상이유를 명시한 변상판정서를 해당 기구에 보낸다.
3. 변상판정서를 접수한 기구는 감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변상해야한다.
4. 변상을 기피한 자에 대해 감사국장은 해당 관계기관에 민, 형사 처분을 위한 고소 고발 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로 변상이 완료되고 개선의 점이 현저할 경우는 고소 고발 을 취하할 수 있다.
5. 중앙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의해 판정된 변상책임에 따라 상임위원회 및 대의원총회 진행 시 피감사단위장과 변상액을 공개할 수 있다.

###### 제 26 조 (시정 등의 요구)

1. 전항의 요구가 있을 때는 해당 기구장은 중앙 감사위원회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시행 해야 한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요구를 받은 기구는 그 조치 또는 개선의 결과를 중앙 감사위원회 에 통지하여야 한다.
3. 시정 요구 횟수는 최대 2회로 정한다. 2회 초과 시 중앙 감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징 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 27 조 (징계의 요구)

중앙감사위원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 자료의 제출을 해태한 경우에는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 제 28 조 (징계의 수위)

중앙 감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수위로 징계요구를 할 수 있다.

1. 주의 : 학생회비 사용의 적절성 판단이 가능하나, 학생회칙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 경 우
2. 경고 : 학생회비 사용의 적절성 판단이 불가능하거나(결제 영수증 미제출 등)사용이 부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단, 주의 2회는 경고 1회와 같다.)
3. 사용내역 항목 중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항목의 기준은 영수증 한 장으로 한다.)
4. 한 사업에 대해 경고를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 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경고를 1회 이상 받은 사업의 개수가 전체 사업 개수의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전체 사업에 쓰인 학생회비 전액을 환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29 조 (탄핵요구)

중앙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 부정이 현저한 경우나 제 25, 26, 27 조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의 인출금비 및 해당기구의 장이나 관계인에 대하여 탄핵을 요구할 수 있다.

##### 7절 재심의

###### 제 30 조 (재심의 청구)

제 25조 규정에 의한 변상판정에 대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본인 해당기구의 장은 변상판 정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감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 제 31 조 (재심의 청구방법)

재심의 청구 시에는 재심의 청구서로 한다. 전항의 청구 시에는 청구의 내용과 그 이유를 명백히 밝히고 계산서,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 제 32 조 (재심의 결과처리)

1. 중앙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 이를 기각한다.
2. 중앙감사위원회는 재심의 청구가 이의 없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기각하고 재심의 청구 가 이의 있다고 인정할 경우 원처의 요구를 취소 또는 그 내용을 변경한다.

###### 제 33 조 (감사 보고사항)

감사보고 작성 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한다.

1. 세입, 세출 결산의 확인
2. 세입, 세출 결산금액과 학교당국에서 제출하는 계산서의 부합여부
3. 회계감사의 결과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 승인 내역
5. 징계 또는 문책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6. 시정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기타 감사위원회가 필요한 사항(공약, 사업, 보조감사)
8. 피감사 기구의 건의 사항
9. 감사 소견 및 평가

###### 제 34 조 (감사 보고서)

감사위원회는 끝으로 모든 감사 자료를 토대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감사보고서 작성 시에 정직성, 명확성, 적시성, 간결성, 품격유지 등을 원칙으로 지체 없이 작성한다.

###### 제 35 조(감사시기)

감사시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1. 정기감사 : 감사는 1학기가 종료된 후 상반기 감사와 2학기가 종료된 후 하반기 감사로 2번 시행하며, 중앙 감사위원장의 권한으로 지정된 기간에 실시한다.
2. 특별감사 : 특별한 사업에 있어 중앙 감사위원회의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이상의 찬성 으로 실시한다.

###### 제 36 조 (감사결과 공고)

중앙감사위원회 및 단대 감사위원회는 감사가 종료된 후 한 달 이내로 낙산의 메아리에 공고해야한다.

##### 8절 감사자료의 보관 및 열람

###### 제 37 조 (보관)

1. 감사 자료의 보존 기한은 감사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5년이며, 중앙감사위원회에서 지정한 곳에 보관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존 기한을 경과한 문서는 중앙감사관리위원장에 의하여 폐기할 수 있다.

###### 제 38 조 (감사 자료의 열람)

1. 감사 자료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문서 출입 대장에 사용자의 인적 사항을 기록하며 회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2. 보관 자료는 총대의원회원 1인을 대동한 경우에만 열람 가능하며, 최종 감사가 완료된 자료는 반출할 수 없다.

**한 성 대 학 교**

**선 거**

**시 행**

**세 칙**



# 한성대학교 총대의원회

## 목차

**1장 총칙 33**

**2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33**

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33

**3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5**

2절 중앙선거선관리위원회 35

3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37

4절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38

**4장 선거운동본부 38**

5절 선거운동본부 38

6절 선거운동본부장 40

7절 참관인 41

[**5장 선거 42**](#_TOC_250007)

8절 선거일정 42

9절 선거운동 42

10절 온라인 선거운동 47

[**6장 투표 49**](#_TOC_250006)

[**7장 이의제기 51**](#_TOC_250005)

[**8장 징계 51**](#_TOC_250004)

[**9장 개표 54**](#_TOC_250003)

[**10장 당선 55**](#_TOC_250002)

[**11장 재투표 및 재·보궐선거 56**](#_TOC_250001)

11절 재투표 56

12절 재선거 57

13절 보궐선거 57

[**부칙 58**](#_TOC_250000)

### 제 1 장 총 칙

###### 제 1조 (선거시행세칙의 목적)

본 선거시행세칙(이하 세칙)은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선거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조 (기본이념)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한다.

###### 제 3조 (적용범위)

* 1. 본 세칙은 한성대학교 총선거와 재선거, 보궐선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 선거는 본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행한다.
  3. 학과(부), 트랙학생회장의 선거는 해당 단과대학 학생회의 선거시행세칙에 준하여 시 행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규칙이 없을 경우 본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
  4. 본 규칙에 없는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 및 각 선거 운동본부대표의 합의에 의 해,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한다.

###### 제 4조 (대표자 및 각 기구의 책임)

중앙운영위원회, 확대운영위원회, 대의원 등은 선거가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 제 5조 (세칙 해석의 기준)

1. 이 세칙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이 세칙 전체의 논리 적 체계성에 비추어 선거의 민주성,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특 히 대표자 독단의 자의적 해석은 지양하도록 한다.
2. 이 세칙의 해석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의결로 해석을 확정한다.

### 제 2 장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1절 선거권과 피선거권

###### 제 6조 (선거권)

선거권은 본 회의 회원 모두에게 있음을 원칙으로 하며, 선거일 공고일 현재 (투표일 10일 전) 등록 확인된 재학생으로 각 단위별 선거권자는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
2. 총대의원회 : 해당 학기 대의원 전원
3. 단과대학 학생회 : 해당 학기 각 단과대학 재학생 전원
4. 학생복지위원회 :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
5. 동아리연합회 :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

###### 제 7조 (피선거권)

총 선거의 입후보자들은 학생회칙 제 14장과 선거시행세칙 제 8조의 자격기준, 제 9조의 입 후보자 등록기준을 따른다.

###### 제 8조 ( 자격기준 )

1. 모든 학생자치기구의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직전 학기까지의 전체 누적 평점이 1.88/4.5 이상을 취득한 자
   2. 직전 학기 학사경고를 받지 않은 자
   3. 징계나 제적 등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4. IPP 및 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자 (단, 미래플러스대학은 제외한다.)
   5. 해당 학기 학생회비를 납부한 자
2. 각 단위 별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총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로서 회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정·부학생회장은 제1 트랙이 속한 학과 혹은 학부가 달라야한다.)
   2. 총대의원회 정·부의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대의원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단, 정·부의장은 제1 트랙이 속한 학과 혹은 학부가 달라야한다.)
   3. 단과대학 정·부학생회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단대 정원5%이상의 추 천을 받은 자.
   4. 학생복지위원회 정·부위원장은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회원 5%이상의 추 천을 받은 자. (단, 정·부위원장은 제1 트랙이 속한 학과 혹은 학부가 달라야한다.)
   5. 동아리연합회 정·부회장은 본교 동아리 회원이며, 4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한 자로서, 동일 동아리에 3학기 이상 등록되어야 하며, 회원 5%이상의 추천을 받 은 자 (단, 동아 리연합회 정·부학생회장은 동아리 소속이 달라야 한다.)
   6. 신설 학생회 정·부학생회장은 신설 학생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자격기준을 충족 하는 자로서 신설 학부(과)생 5%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3. 총선거에서 낙선한 자는 다음 년도 재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타 직책 동일 적용)

###### 제 9조 ( 후보자 등록 )

1. 총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자는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입후보자 등록원서(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양식)
   2. 후보자 본인이 직접 받은 회원 5% 이상의 추천서
   3. 재학증명서
   4. 성적증명서
   5. 투개표인 참관인 명단
   6.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
   7.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서류
2. 총선거의 모든 입후보자는 2인 1조로 공동 입후보하며 등록 마감일 18시까지 전조의 서류 를 구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입후보자가 입후보를 사퇴할 때는 본인이 직접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중앙선거관리위 원회는 이를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중 앙 선 거 관 리 위 원 회

##### 제 2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제 10조 (지위)

총선거에 관한 제반의 업무를 선거시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통제할 권한을 가진 최고권 력기구이다.

###### 제 11조 (목적)

한성대학교 총선거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12조 (업무 및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 진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선거에서 공정성, 민주성, 대중성을 구현할 제반 사업을 기획, 집행한다.
2. 총선거를 올바른 정책 대결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제반 활동을 전개한다.
3.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4. 총선거 관련 취재ㆍ보도에 관한 학내외 각 언론 기관과의 협의를 주도한다.
5. 선거시행세칙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선거운동본부가 합의한 선거방식에 대한 집행 을 감시하고 이를 시행치 않을 시 사안의 경중에 따라 경고 등을 포함한 선거운동본부 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공정선거를 해치는 제반 선거운동사례를 적발하여 타당한 징계를 가할 수 있다.
7. 선거시행세칙을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선거에 대한 각종 의결권을 갖는다.
8.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피선거권이 없다.

###### 제 13조 (구성)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 마감일 10일 전에 구성을 발의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대의원 의장이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긴급한 사항이 있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동의에 의해 필요한 경우 대의원 부의장 또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 안에서 투표로 결정 난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 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은 30명 이하의 정원으로 하며 20명 이상의 정위원과 10명 이 하의 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정위원은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선출 후 인원이 부족할 경우 상 임위원을 포함하며, 부위원은 현대 총대의원회 국장에서 선출 후 인원이 부족할 경우 국원 을 포함한다. (단, 등록원서 검토 및 각종 의결에 대해서는 정위원만이 자격을 지닌다.)

###### 제 14조 (소집 및 의결)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반 일상 업무 처리와 후보자의 이의제기 등이 있을 시 중앙선거 관리위원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 1/3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에 의해 결정한다.

###### 제 15조 (위원의 해임사유)

1. 중앙선거관리위원은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그 밖에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학생회칙, 세칙, 규칙을 위반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때
   3. 선거에 입후보하거나 선거운동본부에 가입할 때
   4. 직무수행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2.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는 서식에 의하여야 하며, 해임요구에 대한 이유를 명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 본부장에 한정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 요구서가 접수되면 위원장은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 심의ㆍ의결한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에 대한 해임은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이 때 해임 요구의 대상이 된 중앙선거관리위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재적 총수에서도 제한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이 사임할 때 또는 해임된 때 새로운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이 때 재적 위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사임ㆍ해임 또는 추가임명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 제 16조 (출석요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원활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회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1. 후보자
2. 각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
3.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징계 사유와 관련된 자

###### 제 17조 (해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에 관한 업무 일체가 종료되♘을 시 해체된다.

##### 제 3절 중앙선거관리위원장

###### 제 18조 (지위)

1.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하여 선거 관리 제반 업무를 총괄, 책임진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총대의원회 의장이 역임하며 선거 기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표한다. 단,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총대의장의 궐위 시 총대의원회 부의장에게 자격을 위임 할 수 있다.

###### 제 19조 (업무 및 권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은 이하 열거하는 각 항의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선거에 관한 제반 사업을 관리 및 감독한다.
2. 선거 기간 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결정한다.
3.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노력하며 선거시행세칙 위반 및 선거 분위기를 문란케 하는 일체의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결정 및 실행한다.
4. 선거시행세칙에 의거하여 투ㆍ개표 업무 제반을 관리하며 투ㆍ개표 시작 및 이상 유무 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제 4절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 제 20조 (지위)

1.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는 학과(부) 학생회장, 트랙학생회장 선거를 각 단과대학 선거시 행세칙에 의하여 진행, 조절 할 권한을 가진다.

###### 제 21조 (목적)

1. 각 단과대 선거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한 공정하고 청렴한 선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2조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각 단과대학선거관리위원장을 위원으 로 구성한다.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의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부재 시 대의원 부의장이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의장 권 한을 대행할 수 있다.)

###### 제 23조 (업무 및 권한)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는 다음과 같은 업무 및 권한을 갖는다.

1. 총학생회, 총대의원회, 각 단과대, 학생복지위원회, 동아리연합회의 회장단 선거와 각 단 과대 선거 일정을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각 단과대 선거 후보자 구비서류 및 자격요건을 교차 검토한다.
3. 투표소 설치 장소 및 운영 일정 등 투표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여 결정한다.
4. 기타 각 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결정하기 힘든 사항을 논의하여 결정한다.

### 제 4장 선거운동본부

##### 제 5절 선거운동본부

###### 제 24조 (목적)

선거운동본부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도와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 감독 하에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진행하는 본 회의 회원으로 구성된 자발적 조직이다.

###### 제 25조 (구성)

* 1.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기구 정·부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 투·개표 참관인, 선거운동본부 원으로 구성된다.
  2.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은 본 회의 선거권을 가진 자에 한하여 구성되며, 교내 모든 학생 자치기구 선거에 관하여 하나의 선거운동본부에만 소속할 수 있다.
  3. 아래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본부에 소속할 수 없다.
     1.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
     2. 총대의원회 정의장과 부의장
     3. 각 단과대학 정학생회장과 부학생회장
     4. 학생복지위원회 정위원장과 부위원장
     5. 동아리연합회 정회장과 부회장
     6. 각 학과(부) 정학생회장과 부회장
     7. 각 트랙학생회장
     8. 대의원 및 상임위원
     9.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 학생회의 국장
     10. 현재 교내 언론기관 및 출판물을 제작·배포하는 기관에 소속된 자
  4. 선거운동본부에 소속할 수 없는 자가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했을 경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는 징계를 포함한 제재조치를 결정 및 실행할 수 있다.

###### 제 26조 (선거운동본부원)

1. 선거운동본부원은 선거 기간 동안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거운동을 돕고 선거운동본부 의 활동을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2. 선거운동본부원은 후보자 등록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정 양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등 록해야 하며 그 이후부터는 변동 사항이 있을 시 매일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며 이에 대한 효력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3.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 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거나, 신청에 결함이 있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동본부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4.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의사가 없는 자를 강제로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할 때 중앙선 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해당 선거운 동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자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선 거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
6. 한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로 등록된 기록이 있는 자는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원으 로 등록할 수 없다.
7. 선거운동본부원이 두 개의 선거운동본부에 이중으로 등록되♘을 때는 해당 인원에 대한 선거운동권을 박탈한다.

###### 제 27조 (의무 및 권한)

1.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기구의 선거에서 해당 후보자의 당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진행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투표 및 개표 참관인을 파견하여 공정한 투·개표와 질서 유지가 이루어 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을 성실히 준수하여 민주적이고 공정한 선거

를 위해 노력해야한다.

1. 선거운동본부는 정책경쟁 중심의 선거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총선거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학칙에 위배되지 않고 적절한 중 앙선거관리위원회에 협의사항 및 지시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3.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시행세칙 제 7장에 의거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4. 선거운동본부는 교내의 한 개의 선거운동본부실을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선거운동본부실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 때 합의 하에 결정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본부실로 사용할 공간을 확보해야한 다.
   3. 선거운동본부가 선거운동본부실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 관련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 중 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조치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4. 선거운동본부실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된 자만이 출입할 수 있다.

##### 제 6절 선거운동본부장

###### 제 28조 (선거운동본부장)

1.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 기간 동안 선거운동본부를 대표하고, 선거 과정 전반에서 후보자 를 보좌하며, 후보자를 대신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게 선거 운영 전반에 관한 의사를 표명한다.
2. 선거운동본부장은 후보자가 임명하며, 후보자 등록 시 함께 등록한다.
3. 선거운동본부장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가진다.
   1. 선거 기간 내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운동본부의 대표로써, 선거 진행 제반 사항을 성 실히 이행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적극 협조한다.
   2. 선거본부위원장은 본 선거시행세칙을 숙지하고 준수하며, 선거운동본부원들이 선거시 행세칙의 주요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지도할 책임을 갖는다.
   3. 선거운동본부장은 선거 기간 내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 참석할 의무를 가지며, 불가피 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할 시 후보자를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 1인을 대리인으로 참 석 시킬 수 있다.
4. 후보자는 선거운동본부장을 교체 및 위임할 수 있으며, 교체 및 위임 신청은 중앙선거관 리위원회 소정 양식에 의하여 매일 18시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야 한다.
5. 선거운동본부장의 교체 및 위임 신청이 접수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접수 당일 내에 이를 심사하여 의결하고, 해당 사항은 익일부터 유효하다.

###### 제 29조 (선거운동본부장 회의)

1. 선거운동본부장 회의는 총선거를 원활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선거운동본부장 회의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선거운동본부장의 참 석을 원칙으로 한다.
3.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는 후보자 등록서류 검토 이후 실시한다.
4.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전반에 대한 설명
   2. 세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세부 사항 결정
5. 선거 기간 내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 필요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판단 하에 선 거운동본부장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회의시작 12시간 전에 각 선거운동본부에게 이를 공지하여야한 다. (단,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불시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는 해당 경우에 한하여 징계조치를 받지 않는다.)
7.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의 논의 사항은 각 선거운동본부장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협의에 따르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의결한다.
8. 선거운동본부장 회의는 녹취가 가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문서로 기록한다.

##### 제 7절 참 관 인

###### 제 30조 (투·개표 참관인)

투표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해당 투개표소에 배치되어 투표 진행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 제 31조 (자격)

후보자 등록 서류에 명시된 자로 각 후보당 1인으로 한다.

###### 제 32조 (이의제기)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개표 상황을 참관, 감독하여 투개표 상황에 대하여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제 33조 (전제조건)

1. 참관인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소속되며, 참관인 업무를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의 활동을 제한한다.
2. 참관인이 투표소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타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했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은 퇴장을 명할 수 있으며, 투표종료까지 해당 투표소에 참관자격을 상실한다.
3. 참관인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을 때 부정행위로 간주한다.
   1. 투표를 방해했을 경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투표 당일에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특정 후보를 지칭하는 물품을 소지하거나 언동을 할 경우)
   3. 참관인이 투표시간 동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부한 명찰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4.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 제 34조 (기타사항)

1. 참관인들은 당일 투표 시작 및 종료 시 투표소를 떠날 수 없으며 특정 후보 측의 참관 인 부재 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 후보 측의 이의제기는 기각한다.
2. 참관인은 투표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투표함을 운반한다.
3. 참관인이 결정하지 못할 때 선거운동본부장이 입회할 수 있다.

### 5장 선 거

##### 제 8절 선거일정

###### 제 35조 (선거일정)

1. 총선거는 매 학년도 11월 중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당해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정시기에 행한다.)
2. 구체적인 선거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3. 선거일정 중 유세기간은 최소 14일로 한다.
4. 2항의 일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등록 마감 1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9절 선거운동

###### 제 36조 (선거운동)

1. 선거운동이라 함은 특정후보의 당선을 위한 제반의 행위로 규정한다. (특정후보를 지칭 하는 물품 또는 언동 포함)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1.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2.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
   3. 교내 학생 자치기구 추천인의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3.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은 본 세칙의 규정에 한하여 해당 후보자 및 해당 후보자가 속한 선거운동본부의 구성원만 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확대운영위원회 위원 (단,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사퇴한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신임 학과(부)학생회장, 부회장, 트랙학생회장(단, 학과(부), 트랙학생회 선거가 치러지지

않은 학과(부), 트랙은 총학생회 선거 운동기간 현재 학생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 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1. 상임위원, 대의원 (단,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사퇴한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2. 중앙운영위원회 소속 단위 학생회의 국장 (단, 등록마감일 7일전까지 사퇴한 자는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3. 휴학 및 정학 중인 자
  4. 본교의 재학생이 아닌 자

###### 제 37조 (선거운동 방법)

선거운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선거 유세(개인유세, 합동유세)
2. 정책토론회
3. 후보자토론회
4. 게시 선전물(포스터, 현수막)의 게시
5. 배포 선전물(리플렛, 정책 자료집)의 배포
6. 이동 선전물(피켓, 어깨띠, 선거운동본부복)의 사용
7. 온라인 선거운동 공간의 구성 및 운영
8. 교내 언론기관의 인터뷰
9. 그 밖의 당선을 위한 각종 행위

###### 제 38조 (개인유세)

1. 개인유세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개별 선거운동의 일환으로 강의실 선거유세, 야외 유세로 국한한다. (단, 오프라인 선거유세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선거유세 영상으로 대체하 여야 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시간과 공간에서만 개인유세를 실행할 수 있다. 단, 지나친 소음 등으로 학우들의 불편을 초래할 위험이 있거나, 초래한 때에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제한할 수 있다.
3.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 및 장소를 하나의 선거운동본부가 독점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필 요 시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독점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4. 개인유세와 관련된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5.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비방 등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

###### 제 39조 (합동유세)

1. 합동유세는 해당 선거 중 1회에 한하여 실시하며, 해당 선거의 출마한 선거운동본부 과 반수의 동의로 시행여부를 결정하고 참석에 대한 여부는 각 선거운동본부에서 자율적으 로 결정한다.
2. 합동유세가 진행될 경우 일시, 장소, 후보자의 발표시간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 리 정하여 개최 5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3. 합동유세의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항과 같다.
   1. 후보자는 유세 5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한다.
   2. 후보자는 유세가 끝날 때까지 퇴장 할 수 없다.
   3. 후보자는 각 선거운동본부의 정·부후보자 모두를 포함한다.
4. 각 후보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전승인을 받아 개인소견 발표를 할 수 있다.
5. 각 후보자는 교내 언론기관의 소견발표 요청이 있을 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 라 동등하게 소견발표를 할 수 있다.(공개질의)

###### 제 40조 (정책토론회)

1. 본 총선거가 정책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간의 정책토론회를 1회 실시 한다.
2. 정책토론회는 후보자 정책발표 – 학내언론사(프레스센터)의 질의와 응답 – 정책토론회 참석 자의 질의로 구성한다.
3. 후보자가 해당 순서 5분전까지 정책토론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한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1조 (후보자토론회)

1. 본 총선거 후보자의 능력 중심의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자간의 후보자토론회를 1회 실시한다.
2. 후보자토론회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른다.
   1. 경선일 경우, 경선 후보자들끼리 정책에 관하여 질의 및 응답 –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정한 주제에 대한 본인 생각 답변
   2. 단선일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주제에 대한 본인 생각 답변
3. 후보자가 해당 순서 5분전까지 후보자토론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이를 포기한 것으로 간 주 한다.
4.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42조 (선전물 게시 배포 규정)

1. 모든 선전물은 선거시행세칙에 준하는 것만이 허용되며 이외의 상황이 발생할 시 중앙 선거 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 모든 선전물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지한 일정에 맞춰 견 본 및 원본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3. 모든 선전물은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에 따라 게시 및 배포하여야 한다.
4. 모든 선전물은 선거설명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부수에 한하여 제작할 수 있 으며, 정해진 매수 및 종류 이외의 선전물은 제작 및 게시, 배포할 수 없다.
5. 선전물이 본 선거시행세칙에 기재된 선전물의 규격과 맞지 않을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는 해당 선전물의 게시 및 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 명령 1 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5% 범위의 오차는 허용하며, 선전물이 허가되지 않 을 경우 해 당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일정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6. 모든 선전물은 견본과 원본이 동일하여야 하며, 맞지 않을 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 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단, 징계 이후 해당 선거운동본 부는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내한 일정에 따라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7. 선전물이 타 후보자에 대한 비방 혹은 본 세칙에 위반되거나 민주적인 선거 분위기를 해칠 수 있 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게시 및 배포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해당 선거운 동본부에 경고 1회의 징계를 줄 수 있다.
8.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모든 선전물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9. 선전물과 관련한 아래 각 호의 사항은 금지한다.
10. 스티커 제작 및 부착
11. 스프레이, 페인트 등 제거하기 어려운 선전물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지 않은 선전물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선전물
14. 학술정보관, 상상빌리지, 상상관 전층에서의 선전물 부착
15. 타 후보 선전물위에 선전물을 부착
16. 타 후보 선전물 훼손.
17. 10m 이내에 동일 선거운동본부의 게시물
18. 모든 선전물은 선거운동기간 내에만 게시하며, 선거유세 마지막 날 23:59까지 모두 수 거 및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43조 (포스터)

1. 포스터는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사진과 약력, 간략한 공약, 기타 문구 등을 넣어 제 작 및 게시하는 게시 선전물이다.
2. 포스터는 선거운동본부마다 1종류만 제작 및 게시할 수 있으며, 매수는 30매로 제한한 다.
3. 포스터의 크기는 A2(가로 420mm, 세로 594mm)로 제한한다.
4. 포스터는 유리 테이프(투명 테이프)를 통해 게시한다.
5. 포스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다.
6. 포스터는 특정 장소에 부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배포할 수 없다.
7. 이외의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결정한다.

###### 제 44조 (현수막)

1. 현수막은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의 사진 및 이름, 기타 문구 등을 넣어 게시하는 게시 선전물 이다.
2. 현수막은 선거운동본부마다 종류와 상관없이 총 4개까지 제작 및 게시할 수 있다.
3. 현수막의 크기는 가로 500cm, 세로 100cm 이하로 제한한다.
4. 현수막은 로프를 통해 게시한다.
5. 현수막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는 게시 할 수 없다.
   1. 만국기, 애드벌룬, 네온사인, 형광 그 밖에 전광으로 표시하는 방법
   2.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현수막이나 교내 교통 신호 등의 안전표지나 기타 안내판을 가리 는 방법
   3.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
   4. 투표장소 내부 혹은 맞은편에 내걸리게 하는 방법
   5. 통행에 방해되는 위치에 게시하는 방법
   6. 이외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하는 방법
6. 현수막이 내용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 시, 동일한 원본의 현수막으로 교체 가능 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인준을 받는다.
7.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 제 45조 (리플렛)

1. 리플렛은 선거운동본부명, 후보자 약력, 공약, 기타 문구 등을 담아 배포하는 배포 선전 물이다.
2. 리플렛은 선거운동본부마다 1종을 제작 및 배포 할 수 있다.
3. 리플렛의 크기는 가로 A4(가로 210mm, 세로 297mm)이하로 제한한다.
4. 리플렛은 양면, 접지 제작이 가능하며 해당 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결정 한다.
5. 리플렛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소속만이 배포할 수 있다.
6.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 제 46조 (정책 자료집)

1. 정책 자료집은 선거운동본부의 공약을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제작하는 배포 선전물이다.
2. 정책 자료집은 선거운동본부마다 1종을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다.
3. 정책 자료집의 페이지 크기는 가로 B5(가로 182cm, 세로 257mm)이하로 제한하며 표지 포함 20페이지 이하로 제한한다.
4. 정책 자료집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소속만이 배포할 수 있다.
5.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 제 47조 (피켓)

1. 피켓은 선거운동본부명을 담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이동 선전물이다.
2. 피켓은 선거운동본부마다 종류에 상관없이 총 6개까지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다. (단, 피 켓의 교 체 및 파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수를 거친다.)
3. 피켓의 크기는 4절지(가로 394mm, 세로 545mm) 이하로 제한한다.
4. 피켓은 해당 선거운동본부 소속만이 유세 시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피켓은 특정 장소에 고정하여 게시할 수 없다.
6.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 제 48조 (어깨띠)

1. 어깨띠는 선거운동본부의 이름 등을 담아 제작하여 홍보에 활용하는 이동 선전물이다.
2. 어깨띠는 선거운동본부마다 1종을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다.
3. 어깨띠의 수량은 20매로 제한 한다.
4. 어깨띠는 해당 선거운동본부 소속만이 유세 시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5.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정한다.

###### 제 49조 (선거운동본부복)

1. 선거운동본부복은 해당 선거운동본부의 소속임을 알리며 홍보에 활용하는 이동 선전물 로 상· 하의, 모자·장갑·목도리 등의 장신구를 의미한다.
2. 선거운동본부복은 선거운동본부마다 최대 3종을 제작 및 활용할 수 있다.
3. 선거운동본부복의 종류별 수량은 10개로 제한한다.
4. 선거운동본부복은 유세 시에 한하여 해당 선거운동본부 소속만이 착용할 수 있다.
5. 이외 세부사항은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 정한다.

###### 제 50조 (선거운동 금지사항)

* 1. 본 회의 회원 누구든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시 부정선거운동 행위로 간주하며,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제재 및 징계를 받을 수 있다.

1.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당선 또는 낙선을 예상하는 모의 투표를 할 수 없다.
2.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특정 장소에서 특정 명목으로 음식물 등 기타 금품을 제 공할 수 없다.
3. 누구든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 없이 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형식의 설문 조사를 할 수 없다.
   1. 학술정보관, 상상빌리지, 학교 밖 공간에서의 선거운동은 금지한다.
   2.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을 수정할 수 없다.
   3.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기간 중 선거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을 일절 금한다.
   4. 모든 선거운동은 교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매체에서 이루어짐을 원칙으로 한 다.
   5. 각 후보 간 인신공격이나 비방벽보를 금지한다. 만약 비방벽보가 부착되면 즉시 중앙선 거 관리위원회에서 철거한다.
   6. 선거운동본부 이외에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선전 활동 및 출판물을 제작, 배포할 수 없다.
   7. 선거운동과 관련된 모든 제보 및 문제제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을 통해야만 한다.
   8. 해당 조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선거시행세칙 8장에 의거하여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다.

###### 제 51조 (선거비용 총액 제한)

1. 선거비용의 과도한 지출을 막고 올바른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해 선거비용 총액 제 한제를 실시한다.
2. 선거비용은 식비를 제외하고 선거시행세칙에 따라 선거를 진행함에 있어서 지출된 비

용을 의미하며, 선거비용의 총액은 각 선거운동본부당 200만원으로 제한한다. (단, 학 교의 지원 사항은 총액에서 제외한다.)

1. 각 선거운동본부는 선거운동 마감일 18시까지 영수증을 포함한 결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2. 선거비용 관련 징계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 하 징계조치를 받을 수 있 다.

##### 제 10절 온라인 선거운동

###### 제 52조 (온라인 선거운동의 목적과 원칙)

1. 온라인 선거운동의 목적은 보다 정책 중심적인 선거를 위하여 선거 관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선거권 행사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를 위하여 온라인상 익명성을 이용하여 근거 없는 루 머나 비난이 남용되거나 과열되는 것을 제지 할 수 있다.
3. 온라인 선거운동은 실명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3조 (온라인 선거운동)

1. 온라인 선거운동이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온라인 공간상에서의 선거운동을 말한

다.

1. 각 선거운동본부별 온라인 선거운동은 정·부 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으로 제한한다.
2. 각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페이스북 페이지 1종을 신설하여 운영 할 수 있고 이를 ‘온라인 선거운동본부‘라 칭한다.
3. 온라인 선거운동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온라인 선거운동본부 내 선거자료 게시 (단, 해당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2. 온라인 선거운동본부 게시물에 대한 댓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 페이지의 게시물 공유
   4. 온라인 선거운동본부 게시물 공유
   5. 기타 페이스북 페이지 내에서의 댓글
4. 온라인 선거운동 시 각 선거운동본부는 다음 각 호의 행동을 할 수 없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범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
   2.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하는 글과 청탁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게시 및 전송
   3. 정·부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을 제외한 선거운동본부 구성원의 온라인 선거운동
   4. 이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한하는 행위
5. 선거운동본부가 본 사항들을 위반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
6. 이외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제 54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페이지 운영)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제반 사업 주관 및 공고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하 나의 페이스북 온라인 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 내 댓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페이지 명의로만 작성할 수 있다.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 페이지의 게시물은 각 학생자치기구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 온라인 선거운동본부, 정·후보자, 선거운동본부장의 공유를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온라인 페이지 운영 사항을 위반한 경우 본 회의 회원에게 제재 및 징계할 수 있다.

### 6장 투 표

###### 제 55조 (투표일과 투표시간)

1. 투표는 최대 3일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투표시간은 25시간 이상 진행되어야 한다.
2. 투표 마감 기준으로 투표율이 40%를 초과하고 50%미만인 단위가 존재할 경우 예비일 1일 을 추가하여 진행한다.
3. 마감시간이 지나도 투표를 하기 위하여 투표장에 대기 중인 투표인은 투표를 할 수 있다.

###### 제 56조 (투표장소)

투표 장소는 네 곳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상황에 따 라 6곳 이하로 정할 수 있다.)

###### 제 57조 (투표절차)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신분확인
2. 선거인 명부 확인
3. 투표자의 날인 또는 서명
4. 투표용지 배부
5. 투표

###### 제 58조 (신분확인)

선거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된 신분을 확인하여야 투표를 할 수 있다.

1. 선거인 명부에 등록된 자로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
2. 신분증은 다음의 규정된 신분증으로 한다.
   1. 주민등록증
   2. 학생증
   3. 운전면허증
   4.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공인 된 신분증

###### 제 59조 (투표용지)

1. 투표용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작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날인이 있어야한 다.
2. 투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배부한 투표용지로만 실시한다.

###### 제 60조 (투표함)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과 후보자의 참관인의 입회하에 봉합하고 투표소로 이송한 다.

###### 제 61조 (투표마감)

투표가 끝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은 참관인의 입회하에 투표함을 봉합하고 투표소로 이송한다.

1. 이송 전 투표과정에 대한 이의 여부가 없으면 참관인에게 확인서를 받는다.
2. 이송 시 투표함과 함께 구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인 명부
   2. 참관인 확인서 및 기타서류
   3. 선거관련 물품
   4. 기타 제반문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수행한다.

###### 제 62조 (투표함의 보관)

투표함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관한다.

###### 제 63조 (투표중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 질서가 심히 문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투표를 중지시키고 질 서가 회복되면 다시 투표를 실시한다.

###### 제 64조 (개표장 관리)

개표장 관리는 다음과 같다.

1. 개표는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한다.
2. 개표장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 각 입후보자, 참관인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개표가 실시되면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장의 승인 없이 출입을 금한다.

###### 제 65조 (투표용지의 무효처리)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기표소에 2인 이상 들어간 것.
   2.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3. 날인 및 넘버링이 없는 것.
   4. 불필요한 표식이 있는 것.
   5. 서로 다른 기표란에 2개 이상 기표한 것.
   6. 기표가 없는 것.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정한 기표기를 사용하지 않은 것.
   8. 내용을 타인에게 공개한 것.
   9.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무효라고 정한 것.
   10. 위 사항 이외에도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최종 결정을 내린다.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1. 기표한 것의 일부분 표시되거나 기표한 것 내부가 메워진 것으로서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2. 후보자의 이름, 기호에 찍은 경우
   3. 두 후보자란의 구분선상에 기표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4.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5. 훼손되♘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6. 한 기표란에 두 번 이상 표시한 경우

###### 제 66조 (온라인 투표)

1. 온라인 투표는 모바일, PC 투표로 진행한다.
2. 투표일 및 시간은 선거시행세칙 54조를 따른다.
3. 온라인 투표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모바일 본인인증
   2. 선거 정보(후보자 및 안건 정보) 확인
   3. 투표
4. 신분확인은 모바일 본인인증으로 대체한다.
5. 온라인 투표 시작/마감 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참관인에게 투표율을 안내하여야 한다.
6.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책임 하에 진행하며 선거시행세칙 63조 2, 3항을 따른다.

### 7장 이 의 제 기

###### 제 67조 (이의제기권자)

1. 선거에 관한 이의제기는 각 후보의 선거운동본부장만이 후보등록 마감부터 개표 종료 전 까지 할 수 있다.
2. 선거운동원은 선거운동본부장을 통하여 이의제기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단, 선거운동 원이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후보자 에게 징계를 할 수 있다. 선거 개표 당시는 선거운동본부장이 구두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 으며, 24시간 이내에 이를 다시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 제 68조 (이의제기의 처리)

1.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처리할 수 있다.
2. 이의제기 처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동의로 처리한 다.

### 8장 징 계

###### 제 69조 (정의)

징계란 규칙 각 조항에 어긋나는 행위와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징계 사유라고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해당 후보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 제 70조 (징계의 종류)

1. 징계는 시정명령, 주의, 경고로 나뉜다.
   1. 시정명령 2회 누적 시 주의 1회를 부여하고, 누적된 시정명령은 소멸된다.
   2. 주의 2회 누적 시 경고 1회를 부여하고, 누적된 주의는 소멸된다.
   3. 경고가 3회 누적되면 해당 선거운동본부 후보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다.
2. 시정명령을 받은 3시간 이후에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주의 1회를 부여한다.
3. 주의를 받은 3시간 이후에도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대로 시정하지 않으면, 해당 선거운동본부에게 경고 1회를 준다.

###### 제 71조 (시정명령)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시정명령을 구두로 통보하며, 이를 서면으로 기록한다.

1.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할 수 없는 자를 선거운동본부원으로 등록하였을 때
2. 선거운동본부실이 이외의 공간에서 선거 관련 사무를 진행하는 경우
3. 선전물이 선거시행세칙에 기재된 선전물의 규격과 맞지 않을 때
4. 선전물의 견본과 원본이 동일하지 않을 때
5. 선거기간 내 참관인이 참관인 업무를 제외한 선거운동 시
6. 선거시행세칙 33조 3항 3에 해당할 경우
7.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5,8에 해당할 경우
8. 게시 선전물이 선거유세 마지막날까지 수거 및 철거되지 않은 경우
9. 게시 선전물이 지정된 장소 이외의 공간에 게시될 경우
10. 배포 선전물을 선거운동본부원이 아닌 자가 배포할 경우
11. 이동 선전물의 활용이 선거시행세칙을 위반하는 경우
12. 선거비용 총액 결산에서 지출된 비용관련 자료 누락 시
13. 그 외 선거 진행에 큰 지장을 주지는 않으나, 이 세칙 및 규칙을 위반한 것이 분명하고 빠른 시간 내에 시정이 요구될 때.

###### 제 72조 (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1.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 선거운동본부장 또는 대리인이 참석하지 않을 시
2. 선거시행세칙 33조 3항 2에 해당할 경우
3. 정책토론회에서 후보자가 발표 5분전까지 도착하지 않을 경우
4.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1,2,3,4,6,7에 해당할 경우
5. 선거운동 금지 구역(학술정보관, 상상빌리지, 학교 밖 공간)에서의 선거운동 시
6. 정,부후보자와 선거운동본부장을 제외한 선거운동본부원이 온라인 선거운동을 할 경우
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게시물을 온라인 선거운동본부에 게시할 경우
8.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허용한 범위 이외의 온라인 공간에서의 온라인 선거운동
9. 선거운동본부원 이외의 인물이 선거운동을 했을 때
10. 그 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판단에 의한 주의 항목

###### 제 73조 (경고)

1.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경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이 사실을 공고한다.
   1. 선거시행세칙 49조에서 명시한 부정선거운동을 할 경우
   2. 선거시행세칙 33조 3항 1에 해당할 경우
   3. 선거시행세칙 41조 9항의 6,7에 해당하며, 고의성을 띌 때
   4. 선거운동 기간 중 공약을 수정할 경우
   5. 선거운동 기금 마련을 위한 수익 사업 진행 시
   6. 각 후보 간 인신공격이나 비방벽보를 게시할 경우
   7. 선거비용 총액 결산에서 의도적으로 비용을 조작한 경우
   8. 선거비용 총액 결산에서 200만원 이상의 선거비용이 지출된 경우
   9. 온라인에서의 타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비방하는 글과 청탁 등의 부정선거운동으로 보일 수 있는 내용의 게시 및 전송
   10. 사전선거운동을 할 때
   11. 후보자·선거운동본부장·참관인이 개표장에 참석하지 않을 때
   12.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나 선거인의 자유로운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및 본부원, 참관인에게 금전ㆍ물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할 때

* 1. 선거에 관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ㆍ본부원을 폭행ㆍ협박하거나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할 때
  2. 선거에 관하여 연설을 방해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 할 때
  3.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4. 특정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때
  5.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에 관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다른 후보자, 다른 선거운동본부를 비방하는 행위를 할 때
  6. 그 외 선거운동본부의 행위가 공정한 선거 진행을 의도적으로 해치거나,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할 때

1. 경고를 받은 선거운동본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 공고 게시 12시간 이내에 이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장소 및 낙산의 메아리에 게시한다.

###### 제 74조 (징계의 의결)

선거시행세칙 68조, 69조, 70조의 징계는 즉시 통보가 가능하며, 기타 징계의 의결은 중앙선 거관리위원회원 과반수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 제 75조 (재심의)

1. 선거운동본부장은 경고 3회에 해당하게 될 경우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2. 후보가 경고 3회로 인하여 후보자격이 박탈될 상황이 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 적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 9장 개 표

###### 제 76조 (개표)

개표사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행한다.

1. 개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원만이 할 수 있다.
2. 표의 유, 무효의 기준은 64조를 따른다.

###### 제 77조 (개표장)

1. 개표장은 학교 내의 공개된 장소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2. 개표장에서의 질서유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의 책임아래 수행한다.
3. 후보자는 개표시간 10분전에 개표장에 도착하여야 하며, 개표 종료할 때까지 자리를 지켜 야 한다.

###### 제 78조 (개표소)

1. 개표소는 방청객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설치해야 한다.
2. 개표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개표참관인만이 있을 수 있다.
3. 개표소에서의 연락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장만이 할 수 있다.

###### 제 79조 (개표절차)

개표는 다음의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1. 투표인 수의 공고
2. 투표함 개봉
3. 개표
4. 개표참관인의 재확인 및 득표의 검산
5. 후보의 득표 묶음별로 분류하여 투표함에 재투입

###### 제 80조 (개표의 기준)

1. 개표의 기준은 투표용지, 꼬리표, 선거인명부 순으로 한다.
2. 투표용지의 수와 꼬리표의 차이는 전체투표오차라 한다.

### 10장 당 선

###### 제 81조 (당선의 기준)

당선 기준은 단선과 경선을 구분하여 정한다.

1. 단선인 경우, 총 재적인원 50% 이상의 투표, 투표인원 50% 이상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 다.
2. 경선인 경우, 총 재적인원 50% 이상 투표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단, 1위 득표자 와 2위 득표자와의 득표차이는 전체투표의 오차를 초과하여야 한다. (초과하지 못한 경우,

재투표를 실시한다)

###### 제 82조 (당선공고)

개표결과가 최종 확인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고한다.

###### 제 83조 ( 당선자의 임기 )

1. 총선거 당선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차기 당선자가 없을 시 임시 권한은 2월 말일까지 연장한다.
3. 총학생회장의 서명이 반드시 필요한 업무를 제외한 경우에는 차기 당선자들의 회의를 통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를 구성 할 수 있다. (해당업무의 범위는 당선자와 임기자가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의사 결정 권한은 확대 운영위원회에서 가진다.)

### 11장 재투표 및 재·보궐선거

##### 제 11절 재투표

###### 제 84조 (선거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1. 선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72시간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 이의신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이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서면으로 제출한다.
3. 이의신청의 결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논의 후, 중앙선거관리위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 인원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결정한다.

###### 제 85조 (재투표)

1. 1위 득표자와 2위 득표자의 득표차이가 전체투표오차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 재투표를 실 시한다.
2. 재투표 실시일정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 제 86조 (선거무효)

선거 절차상의 문제로 선거 자체의 효력이 사라지는 일을 말한다.

###### 제 87조 (당선무효)

선거법 위반 따위로 당선인의 당선이 무효가 되는 일을 말한다.

###### 제 88조 (무효소송)

무효 소송이 있을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세칙위반 여부를 즉시 심의 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선거 전에는 입후보 등록의 자동 취소와 당선 후라도 당선무효 또는 선거무효가 된다.

* 1. 선거무효 소송

선거무효소송이란 후보자 개인의 불법선거 혐의가 아닌, 선거절차의 흠을 이유로 선거 자체의 불법성을 문제 삼아 관할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말한다.

* 1. 당선무효 소송

당선무효소송은 선거 진행이 유효했다는 것을 전제로, 당선인의 위법 행위로 인한 당선 의 효력에 관하여 제기하는 소송이다. 따라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사 유로는 당선인 결정 절차상의 흠, 득표수 정산의 흠(개표의 부정 또는 착오) 또는 당선인 으로 된 자의 흠(무자격, 등록일 이후의 입후보 등록) 등을 들 수 있다.

###### 제 89조 (낙선)

1. 단선 또는 경선의 투표율이 50%가 되지 않은 경우
2. 단선인 경우,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3. 경선인 경우, 당선 후보를 제외한 후보자.
4. 후보 등록 마감 후, 후보자 자격이 박탈된 경우

##### 제 12절 재선거

###### 제 90조 (재선거의 실시)

1. 재선거는 당해 총선거 단위 중 무산 된 단위에 해당하여 시행하며, 다음 해 3월 중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1. 재선거를 실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2. 총선거에 해당 단위 후보자가 나오지 않았을 경우
   3. 선거무효 또는 당선 무효가 발생했을 경우
   4. 낙선이 발생했을 경우
2. 재선거에 관한 구체적인 선거 일정과 선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3. 재선거는 본 선거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시행한다.

##### 제 13절 보궐선거

###### 제 91조 (보궐선거의 실시)

1. 보궐선거는 총선거를 진행하는 단위의 정·부후보자가 탄핵, 사퇴, 사고 등의 사유로 궐위될 때, 해당 직위의 잔여 임기가 5개월 이상 일 경우 실시한다.
2. 보궐선거는 잔여임기가 5개월 이상인 때 한하여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되, 잔여임기가 5개월 이하일 때는 각 기구 직임 승계방법에 따른다. ( 단, 방학 중일 경우에는 중앙운영위원회 일정을 논의, 확정하여 개강 후 3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한다.)
3. 보궐선거에 관한 구체적 선거일정과 선거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다.
4. 보궐선거는 본 시행세칙을 기반으로 시행한다.

### 부 칙

본 선거시행 세칙은 2022년 10월 24일부터 그 효력을 발생하며, 이전 세칙은 그 효력을 상 실한다.

**별 지**

##### 한성대학교 학생회칙 개정 내역

제 36대 총대의원회 ‘청랑’

**2020년 11월 6일 전면 개정**

총대의원회 의장 장 예준 총대의원회 부의장 배 유림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이 강현

(개정 사항)

1. 학생회칙 및 세칙의 표지 개정
2. 학생회칙 및 세칙의 워터마크 및 쪽번호 추가
3. 학생회칙 및 세칙의 목차 신설
4. 학생회칙 순서 수정 (학생총회 - 대의원총회 – 상임위원회 – 확대운영위원회 – 중앙운영위원회 – 총학생회장 및 부총학생회장 – 총학생회 집행국 – 총대의원회 – 단과대학 학생회 – 학생복지위원회 – 동아리연합회 – 이하 순)
5. 학생회칙 9장 ~ 12장의 학생대표 임기 및 선출 조항 신설
6. 학생회칙 제 14장 선거 및 선거시행세칙 항목 통·폐합
7. 감사시행세칙 5조 내 중앙감사위원장을 총대의원회 의장으로 수정
8. 감사시행세칙 17조 총대의원회의 감사 신설
9. 감사시행세칙 20조 및 35조 개정에 의한 감사시행방법 및 시기 개정
10. 선거시행세칙 내 ‘절‘의 추가
11. 선거시행세칙 8조 1항 후보자 등록자격 기준 추가
12. 선거시행세칙 25조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에서 최초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와 선거운동본부장 회의의 구분
13. 선거시행세칙 8절 전면개정
14. 선거시행세칙 9절 온라인 선거운동 신설
15. 선거시행세칙 8장 징계의 전면개정
16. 선거시행세칙 내 재선거와 보궐선거의 명칭 재정의

(개정 항목)

학생회칙 4조, 17조, 19조, 22조, 24조, 27조, 28조, 41조, 44조, 45조, 48조, 49조, 51조, 52조, 54조, 56조, 57조, 59조, 64조, 65조, 71조, 78조, 81조, 90조

감사시행세칙 5조, 6조, 16조, 20조, 35조

선거시행세칙 3조, 6조, 8조, 9조, 11조, 12조, 13조, 29조, 31조, 32조, 50조, 54조, 56조, 64조, 65조, 67조, 77조, 83조, 84조, 85조

(신설 항목)

학생회칙 7조, 40조, 53조, 58조, 66조, 73조, 87조, 88조, 89조 감사시행세칙 17조

선거시행세칙 17조, 18조, 19조, 20조, 21조, 22조, 24조, 25조, 33조, 34조, 36조, 37조, 38조, 39조, 40조, 41조, 42조, 43조, 44조, 45조. 46조, 47조, 48조, 49조, 66조

**2021년 5월 18일 개정**

제 37대 총대의원회 ‘파란’ 총대의원회 의장 차 원식 총대의원회 부의장 유 영선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양 희철



**(개정 사항)**

1. 선거시행세칙 8조 4항 후보자 등록 자격 기준 추가
2. 선거시행세칙 4절 선거관리위원장 연석회의 신설
3. 선거시행세칙 79조 투표율 50% 상황에 대한 처리

**(개정 항목)**

선거시행세칙 79조

**(신설 항목)**

선거시행세칙 8조, 20조, 21조, 22조, 23조

제 37대 총대의원회 ‘파란’

총대의원회 의장 차 원식 총대의원회 부의장 유 영선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양 희철

**2021년 11월 05일**

**개정**

(개정 사항)

1. 트랙장을 트랙학생회장으로 명칭변경
2. 학생회칙 17조 대의원 학년기준 개정
3. 학생회칙 10, 11장 업무 및 권한 부서 운영 추가
4. 학생회칙 60, 61조 과학생회, 트랙장 내용의 변경
5. 감사시행세칙 20조 19항 일상운영비 과다지출에 대한 초과금액 반환지출 내용 추가
6. 감사시행세칙 26조 시정 요구 횟수 한정
7. 선거시행세칙 38조 오프라인 유세 불가능 시 대체 기준 마련
8. 선거시행세칙 65조 온라인 투표 신설

(개정 항목)

학생회칙 4조, 7조, 10조, 17조, 22조, 23조, 26조, 27조, 29조, 31조, 41조, 45조, 46조, 51조, 53조, 58조, 59조, 60조, 61조, 62조, 64조, 66조, 67조, 72조, 75조, 87조

감사시행세칙 20조, 26조

선거시행세칙 3조, 4조, 7조, 18조, 20조, 25조, 27조, 30조, 33조, 36조, 38조, 39조, 48조, 68조, 69조, 70조, 71조, 72조, 74조

(신설 항목)

선거시행세칙 65조

제 38대 총대의원회 ‘순백’ 총대의원회 의장 김 산 총대의원회 부의장 한정민

**2022년 05월 16일**

**개정**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이 창주

(개정 사항)

1. 학생회칙 17조 대의원 인원수 개정
2. 감사시행세칙 13조 트랙에 대한 내용 추가
3. 감사시행세칙 20조 17항 학외에 대한 내용 삭제
4. 선거시행세칙 6조 2, 5항 선거권을 해당 학기 재학생 전원으로 개정
5. 선거시행세칙 8조 1항 미래플러스에 대한 내용 제외(4번) 및 학생회비 납부한 자로 내용 추가
6. 선거시행세칙 8조 2항 총대의원회와 동아리연합회 자격기준 개정, 상상력인재학부 내용 삭제
7. 선거시행세칙 9조 1항 학생회비 납부 확인서 내용 추가
8. 선거시행세칙 41조 후보자토론회 신설

(개정 항목)

학생회칙 17조 감사시행세칙 13조, 20조 선거시행세칙 6조, 8조, 9조 **(신설 항목)**

선거시행세칙 41조

제 38대 총대의원회 ‘순백’ 총대의원회 의장 김 산 총대의원회 부의장 한정민

**2022년 10월 24**

**일 개정**

(개정 항목)

선거시행세칙 6조 2항 총대의원회 선거권을 대의원 전원으로 개정 선거시행세칙 8조 2항 총대의원회 추천인을 대의원 5%이상으로 개정 선거시행세칙 18조 2항 세칙 내부 오타 개정4

선거시행세칙 55조 1항 투표시간을 25시간 이상으로 개정

(신설 항목)

학생회칙 7조 10항 겸직 금지에 교내 언론기구 국장과 국원을 추가 신설 선거시행세칙 37조 후보자토론회를 선거운동 방법으로 추가 신설

제 39대 총대의원회 ‘청아’

**2023년 5월 25**

**일 개정**

총대의원회 정의장 곽동민 총대의원회 부의장 권수민 총대의원회 정책국장 신하늘

(신설 항목)



감사 시행 세칙 8절 감사자료의 보관 및 열람 추가

제 39대 총대의원회 ‘청아’

총대의원회 정의장 곽동민

총대의원회 부의장 권수민

**(개정 항목)**

**2023년 10월**

**13일 개정**

선거 시행 세칙 8조 단과대학 후보자 자격기준 세부내용 삭제